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1. 목적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2. 추진방향

- 추진근거: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농업(귀농)인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창업과정 등 연수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3. 추진내용

- 1) 사업량: 2개소 4명(선도농가 2, 귀농연수생 2)
- 2) 사업기간: 2023년 3월~11월
- 3) 사업비: 1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1,200천원/월 × 5월 × 2(개소) = 12,000천원
※ 연수생 800천원/월, 선도농가 400천원/월(20일, 160시간 기준)
- 4) 예산과목: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사업 기반조성, 서부농업기술개발,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5) 교육대상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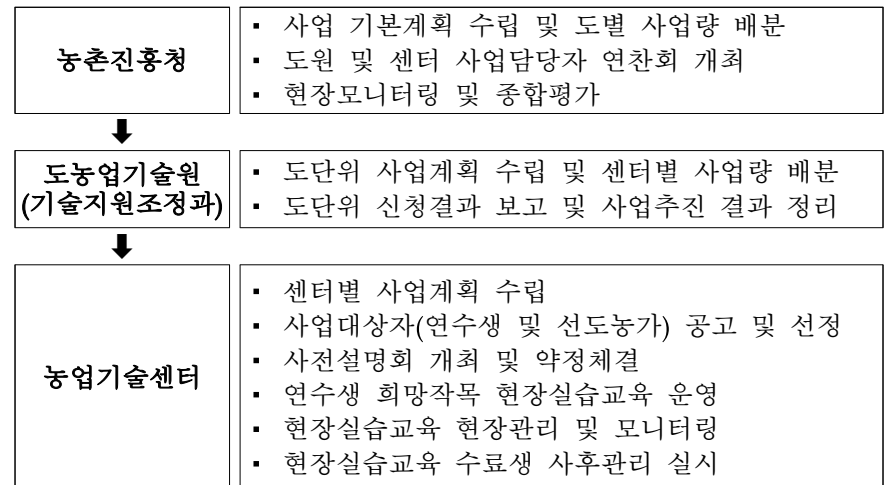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
-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생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가능)
- ※ 해당 지역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6) 추진체계



7) 운영방법

- (필수)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 (선택)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평가회, 자율학습조직, 자가영농실습 등
-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 3~7개월, 월 160시간
 - 자가영농 실습인정(일 4시간, 월 80시간 이내):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
 - ※ 자가영농의 경우에도 선도농가 실습도 병행되어야 함
 - (예) 자가영농 오전 4시간, 선도농가 오후 4시간
- 주작목+부작목 연수가능,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
-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3명 이상 연수는 불가)
- 1명의 연수생이 2명의 선도농가에서 순차적 실습가능(연수기간 중복불가)
- 현장실습보고서(붙임 8)를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 ※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IT 취약계층일 경우 수기로 작성 및 관리

8)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3. 2. 15. ~ 2. 28.(14일간)
- 신청방법: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924) 방문신청
- 제출서류

【연수생】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 ②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 ※ 선정 시 e-HRD 시스템 입력 필요
- ③ 보안서약서(붙임 9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서식)

【선도농가】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 운영계획서: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 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③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 선정 시 e-HRD 시스템 입력 필요
- ④ 보안서약서(붙임 9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10 서식)

9) 사업대상자 선정

【연수생】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센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 ※ 연수대상자 선정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또는 농정심의회에서 선정 가능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 시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붙임 12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

【선도농가】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에 의해 연수시행자를 최종 선정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생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 약정체결은 3~7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현장실습교육 동안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에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10) 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 선정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장

지정 완료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사전설명회』 개최(필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붙임 13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비치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
-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 등 추진
 - ※ 선도농가 및 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 <http://hrd.rda.go.kr>
-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 기기 (휴대폰)를 활용한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 ※ <http://hrd.rda.go.kr>
 - ※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 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과 「출근부」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

11) 교육훈련비 및 교육수당 지급

【교육훈련비】

- (지급대상) 연수생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 (지원조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 10일 미만 연수 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 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4만원(교통비, 식비 포함)
- (1일 교육시간 한도) 8시간
- (신청방법)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출근부(사본),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붙임 14 서식)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 출석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 또는 출근부(서류)를 통해 확인

【교수수당】

- (지급대상) 선도농가
- (지원금액)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지원조건)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 제공하여야 함
 -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신청방법) 선도농가는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붙임 18 서식),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수수당 청구서(붙임 17 서식)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
 - ※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 연수 추진실적(결과)보고서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 (지급시기 및 방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연수수당을 선도농가 은행계좌에 입금

12) 제재조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습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에서 제외

13) 연수생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장실습교육 종료 후 2년간 수료생에 대하여 관리대장(붙임 20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사후관리내용: 귀농여부, 영농종사 현황 등

4. 행정사항

○ e-HRD 시스템 입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교육과정 등록(담당자): 교육 전
 - 회원가입(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선정 후 1주 이내
 - 사업대상자 매칭(담당자): 연수생·선도농가 약정 후 1주 이내
 - 월별보고서 등록(사업대상자): 매월
 - 수료생 등록(담당자): 교육 후 2주 이내

○ ASTIS 등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사업계획: 센터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 <양식 3> 참조
 - 결과보고: 하반기 11.30일 까지 <양식 4>
 - 결과보고<양식 2>: 상반기 6.30일까지, 하반기 11.30일까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사업계획: 센터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시, <양식 3> 참조
 - 결과보고: 하반기 11.30일 까지 <양식 4>

<양식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센터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이메일	휴대폰	연작	수목	연기(개)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영농종	영농지인분비	추후결정	선도농가영인	농업법인	WPL	신지식인	기타
서부센터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 *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양식 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실적																		
센터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이메일	휴대폰	연작	수목	연기(개)	영농현황			선도농가 구분				예산집행액(천원)
											영농종	영농지인분비	추후결정	선도농가영인	농업법인	WPL	신지식인	
서부센터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귀농연수생																	

- * 영농현황은 귀농연수생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 선도농가 구분은 선도농가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사항에 ○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센터	문제점	개선방안

○ 우수사례(도별 2건)

우수 사례

○ 2021~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붙임 20)참조

No	성명	성별	생년 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 작목	연수 기간 (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 1년 후)			영농현황 (실습종료 2년 후)				
								영농 중	영농 진입 준비	추후 결정	영농 중	영농 진입 준비	추후 결정	영농 중	영농 진입 준비	추후 결정		
1	홍길동	남	2000.1 .1.	010-0000 -0000	전주 시	사과	2021.5. 1. ~9.30. (5개월)			○			○			○		
2																		

*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

< 목 차 >

- (붙임 1)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 (붙임 2) 연수생 선정기준(안)
- (붙임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붙임 4)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5)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붙임 6)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 (붙임 8) 현장실습보고서(시스템 입력)
- (붙임 9) 보안서약서
- (붙임 10)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붙임 1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현황
- (붙임 1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 (붙임 1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
- (붙임 14)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
- (붙임 15) 연수생 출근부
- (붙임 16) 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습일지
- (붙임 17)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
- (붙임 1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 (붙임 19)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 (붙임 2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선도농가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경험 * 고용부 농산업인턴제, 농식품부 WPL 등 -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및 교육이수실적 - 영농규모 및 관련분야 기술보유 현황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설 등 - 실습포장, 교육장 위치 및 효율성, 교재 등 구비여부	30		
○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 - 연수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월별 실습내용의 실천 가능성 - 연수후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40		
○ 기타여건 - 농업기업, 유관기관 등 연수관련 협력수준 - 작목반, 타 농가와의 협력 및 참여도 -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 여부 - 현장실습 코칭 및 지도계획(시스템 활용 등) - 여성농업인 여부	30		
합 계	100		
총 합 의 건			

연수생 선정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100점		
신청자 자격 (40점)	○ 신청자 연령(10) ○ 본인 포함 가족수(10) ○ 귀농 후 농촌거주기간(10) ○ 2023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5) ○ 여성 또는 부부참여(5)	○ 만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61세 이상(1) ○ 4명 이상(10), 3명(7), 2명(5), 1명(3) ○ 3년 이상(10), 1~2년(7), 1년 미만(5) ○ 신청자(5), 미신청자(0) ○ 여성 또는 부부참여(5), 그 외(0) ※ 증빙서류: 주민등록 관련자료(주소이력 포함)	() () () ()
	귀농교육 (15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5) ○ 100시간 이상(15), 71~99시간(10), 51~70시간(5), 21~50시간(3), 20시간 이하(1) *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 인정 ※ 증빙서류: 교육수료증 등	()
사업규모 (10점)	○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5) ○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3)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3) *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 ※ 증빙서류: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	() ()
	사업계획 (20점)	○ 사업계획 수립(10) ○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 방안(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증빙서류: 사업계획서(시스템활용계획 등)	() ()
기타여건 (15점)	○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10) ○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 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증빙서류: 자율양식	()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연 령(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기 이수 귀농 교육 과정명	예)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19)		
현 주소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 ① 연 령(만):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 ② 이주 이전 거주지: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센터는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 ④ 연수희망작목: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⑤ 연수희망지역: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 ⑥ 연수희망기간: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선도농가와와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
 - ⑨ 기타 특이사항: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⑩ 추천기관: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추천 가능
-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시스템입력)

연수개요

센터명	연수생		선도농가 성명(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성명	귀농연월			
		2022. 3		4.1~9.30	

현장실습교육 동기(목적)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① 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② 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 연수가능지역			
④ 연수가능기간			
⑤ 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⑦ 기타 특이사항			
⑧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침에 의거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지역: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 ④ 연수가능기간: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12월)
- ⑤ 자기소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 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 ⑥ 현장실습 연수 운영계획 요약: 현장실습교육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 ⑦ 기타 특이사항: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⑧ 확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시행자(선도농가)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함여부

본인은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일 :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뒷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가능작목: 선도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③ 연수가능기간: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3월~12월)
-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연수생이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⑥ 월별 실습사항: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현장실습 사항을 기재
- ⑦ 실습 기대효과: 연수희망기간 내에 현장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 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 ⑧ 확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선도농가 후보자의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붙임 7]

선도농가 학습지원 계획서(시스템 입력)

구 분	주 요 내 용						기타 사항
	시·군·명	선도농가		연수생 성명 (예상)	연수희망기간		
		성명	영농연월		시작일	종료일	
핵심 생산기술							
경영·유통 및 창업							
농촌적응 노하우							
견학·지인 소개							
기대효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표준)약정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장을 “갑”이라 하고, 선도농가 ()를 “을”이라 하며, 연수생 ()을 “병”이라 하며,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2023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내용

제1조(총칙) “을”은 “병”에 대하여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병”은 “을”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을”과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연수생과 선도농가) ①“병”은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을”은 “병”이 당초 “을”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을”과 “병”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을”은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고예방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병”

은 “을”의 지시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⑤“병”은 현장실습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을”은 “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을”과 “병”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 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갑” 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1부.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작성요령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총 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 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에 따라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함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결과 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 * 추진상황 점검시 귀농연수생이 없을시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외출계, 출근부 등)
- ⑦ 종합검토의견: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입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앞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작성요령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 추진실적(결과) 보고서

①선도농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③연수작목	(주작목) (부작목)
전체연수기간	
④보고연수기간	
⑤교육의 주요 내용	
⑥기타 특이사항	

- ① 선도농가: 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② 연수생: 연수생이 2인일 경우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
- ③ 연수작목: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 ④ 보고연수기간: 추진상황 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연수기간을 기입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연수기간과 동일)
- ⑤ 교육의 주요 내용: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한 교육 내용을 기입
- ⑥ 기타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에 의거 상기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 보고서로 제출 (단, 시스템 보고자는 생략 가능)

2023년 월 일

보고자(선도농가) : (인)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 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증명서

성 명 : _____

주 소 : _____

생년월일 : _____

연수기간 : _____ ~ _____ (총 시간)

연수작목 : _____

위 사람은 농촌진흥청이 시행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생 관리대장

No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주소	연수작목	연수기간 (개월)	영농현황 (실습종료시)			영농현황 (실습종료1년 후)			영농현황 (실습종료2년 후)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영농중	영농진입준비	추후결정	
1	홍길동	남	2000.1.1.	000-0000-0000	전주시	사과	2021.5.1.~9.30. (5개월)		○		○		○				
2																	
3																	
4																	
5																	
6																	
7																	
8																	
9																	
10																	
11																	
12																	

*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 후 2년간 사후관리 실시